●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3-006호

시정권고 재결

2022년 12월 22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2-015호)어선 9청진호·어선 제3천일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9청진호·어선 제3천일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대**** *** *** **. **** ****)

시정권고서

귀하가 승선한 제3천일호가 2019. 11. 7. 00:31경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등대로부터 방위 약 074도, 거리 약 20.6해리 해상에서 9청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자인 귀하가 제3천일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유자격자인 선장이 갑판에서 조업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천일호의 우현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9청 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자격자인 귀하가 앞으로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장의 지휘·감독하에 선원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